

#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④

산업연수생 철수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 ('06. 12)

**Q** 지역건설노조의 압력을 받은 발주처와 원청자가 외국 산업연수생을 철수토록 강요함으로써 공사인건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? 또, 추가로 계약상 책임을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?

**A** 원청자와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외국 산업연수생의 고용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나 이를 추인케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, 원청자로서도 이를 전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므로 그의 요구로 외국 산업연수생을 쓸 수 없게 된 이상, 그 임금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청자에 대하여 공사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.

산업연수생의 철수를 요구한 원청자의 행위가 부당한 것은 사실이나, 그것이 불법행위의 전제 조건인 위법한 행위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.

원청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였는지, 하도급업체로서는 그 부당성에 대해 어떻게 표출했고, 어느 정도 반발을 하다가 부득이 하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개별적인 사항들을 아울러 판단할 수밖에 없고, 최종적으로

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.

하도급으로 시공한 배관과 관련, 하자주장 대응방안('07. 1)

**Q**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철배관 소제구 연결커플링 탈착 및 주철 P 트랩 부위 지지물 이탈과 관련해 도급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?

**A** 도급자의 하자주장이 시공불량에 따른 하자인지 또는 적합한 시공이었으나, 사후에 다른 원인에 의한 물리력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하자 보수책임의 발생여부가 확정될 것인바, 발생시점,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을 토대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가 규명될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.

아울러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2차 손해발생과 관련해,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소송고지를 하고, 일부 손해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둔다. ◉

〈자료제공 :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 
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〉